

의안번호	2217185
의 퇴 인	전진숙의원
회 답 일	2026.9.11.
추계번호	26D11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2조(정의)	“친밀관계”를 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서적·신체적·경제적·생활상의 유대 또는 영향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관계로 정의하면서,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가정폭력범죄에서 “친밀관계폭력범죄”로 확대	의무규정
2	제4조(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 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감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친밀관계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제13조(임시조치)	판사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함 1. 서면경고 2.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3.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4.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8.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의무규정
	제15조(비용의 부담)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위탁 결정을 받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다만,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제14조(임시조치의 집행 등) 제3항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매주 2회 이상 순찰·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임시조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제24조(친밀관계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경찰관서의 장은 친밀관계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밀관계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함(제1항)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에게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2항)	
6	제26조(피해자보호명령 등)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1.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전자장치의 부착 5. 친권자인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6.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7. 친밀관계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8. 피해자 및 친밀한 관계인 사람의 주민등록열람 제한	재량규정
7	제28조(임시보호명령)	판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제34조(피해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심리·법률등에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제3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장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3.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5.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6.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7.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10	제43조(실태조사 및 공표)	국가는 주기적으로 친밀관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제4조(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3	제13조(임시조치)	
	제15조(비용의 부담)	
4	제14조(임시조치의 집행 등)제3항	

5	제24조(친밀관계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미대상(현행 예산 내 수행 가능) - 경찰청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관을 대상으로 각종 물품·장비 보급 및 전문교육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예산안에 여청수사관 교육경비 등 13억 5,400만원이 편성됨
6	제26조(피해자보호명령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제28조(임시보호명령)	
8	제34조(피해자 지원)	미대상(현행 예산 내 수행 가능)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등이 포함된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2027년 예산안 기준 443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9	제3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미대상(현행 예산 내 수행 가능)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스톱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이 포함된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2027년 예산안 기준 443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10	제43조(실태조사 및 공표)	미대상(현행 예산 내 수행 가능) - 성평등가족부는 성희롱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매매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여성폭력 통합실태조사를 위하여 16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 상세 사유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안 제4조)

-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보다 범위가 넓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경우 그 대상자 증가로 인해 수강명령 등을 집행하기 위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수강명령 등의 병과 여부 및 그 수강 시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일정 부분은 현행 예산 내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시점에서 추

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법무부는 수강명령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활동 사업에 2027년 총 16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강명령 집행(34억 3,000만원), 기타 교육 및 용품비 등(10억 3,100만원), 각종 심리치료비 등(19억 7,800만원)이 포함됨
 -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개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보호관찰 실시 현황: 2021~2025년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호관찰	93,654	94,375	93,366	96,668	98,220
사회봉사명령	76,784	69,906	61,919	56,272	52,894
수강명령	77,622	84,323	74,457	72,350	70,471
기소유예 교육 등	18,471	22,919	21,522	19,059	20,169
계(실시인원)	266,531	271,523	251,264	244,349	241,754

자료: 법무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안 제13조, 제26조, 제28조)

-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추가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건수 증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된 2027년 법무부 전자감독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 전자감독 예산안 내역: 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
전자감독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11,906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운영	7,919
	장치 및 시스템 개선	12,804
	사업지원경비	679

자료: 법무부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

- 현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퇴거 등 격리(제1호),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

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제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5호), 상담위탁(제6호)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현행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퇴거 등 격리(제1호),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친권행사의 제한(제4호),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제5호)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으로 신설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의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임시조치의 집행(안 제14조제3항)

- 개정안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매주 2회 이상 순찰·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임시조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 업무 증가로 인하여 공무원 증원이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서 법원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 각각의 증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nabo.go.kr